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무제공자에 병원 간병인을 추가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360호, 제2200361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개요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60호)	1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61호)	2
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개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60호)

2024년 6월 12일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61호)

2024년 6월 12일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간병인 소개 사업자¹⁾를 통하여 의료기관²⁾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1조의22 신설), 이에 부수하여 병원 간병인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보험료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노무제공자와 유사하게 규정하려는 것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8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u><신 설></u>	<u>제91조의22(병원 간병인에 대한 특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간병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u>

- 1) 병원 간병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해주는 사업을 하는 자
 2)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상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으로 한정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법률」 제48조의8제1항의 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통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병원 간병인”이라 한다)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48조의8(병원 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 간병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해주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간병인 소개 사업자”라 한다)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소득

	<u>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u> <u>③ 그 밖에 병원 간병인과 간병인 소개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8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병원 간병인”으로, “사업주”는 “간병인 소개 사업자”로 본다.</u>
--	--

2. 검토의견

가. 현행법상 간병인의 법적 지위 및 산재보험 적용 여부

‘간병인’은 환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자로, 법률상 간병인의 정의나 법적 지위를 명시하여 규정한 사례가 없

어 종사 인원을 추산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대략 약 7만명에서 20만명 이내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임.³⁾

간병인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이들의 고용형태와 근로내용에 따라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간병인의 고용은 ①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⁴⁾ ② 직업소개소 등 중개업체의 소개·알선을 통해 개인과 개별적인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 ③ 병원 또는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고 보임.

①, ②에 해당하는 간병인은 개인과 계약을 하는 간병인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⁵⁾ ‘타인’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이 곤란하다고 볼 것이나,

③에 해당하는 간병인은 병원이나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 근로자에 해

3) 한국소비자원(2022),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 개인 간병인 이용서비스를 중심으로”, p. 11.

4)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 구인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한 당사자와의 구체적인 계약을 ‘소개·알선’하는 것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임.

5)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하므로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임.

<간병인의 법적 지위와 산재보험 적용 여부>

고용방식	법적 지위	산재보험 적용 여부
개인 직접 고용 (플랫폼 이용 고용 포함)	가사사용인(비근로자)	비적용
중개 고용 (직업소개소 소개·알선)	가사사용인(비근로자)	비적용
병원·가사서비스제공기관 고용	근로자 또는 가사근로자 ⁶⁾	적용

나. 검토내용

각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인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자로 보고, 이들의 소개·알선을 받아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이 된 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한 것으로, 중개고용 방식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간병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간병인을 질병·상해 등 의료기관에서의 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타 가사사용인, 의료기관 외에 종사하는 간병인이나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간병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인으로서 소개·알선 방식으로 중개 고용된 자에 한정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 이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일반 가사사용인이나 요양원 등 의료기관 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간병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개·알선에 이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간병인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함.

둘째, 노무제공자의 개념에 비추어 간병인이 포함되기 곤란할 소지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①**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②**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③**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간병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노무제공자의 개념에 간병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것임.

셋째,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 또는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간병인과 별개의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체계가 형성될 수 있음.

개정안은 특정한 고용형태의 간병인을 노무제공자에 편입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료 산정 등에 대하여 기존 노무제공자와 유사한 내용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병원이나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간병인은 근로자로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속적으로 부담하고,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간병인은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료의 1/2을 부담⁷⁾하는 등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게 각기 다른 형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행정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①간병인의 노무제공 양태⁸⁾에 비추어볼 때, 간병인 소개 사업자가 간병인의 노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험관계 확인 및 보험행정이 곤란하다는 점, ^②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환자(보호자)가 직접 간병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8) 간병인과 환자 사이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과 간병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간병인협회(간병인 소개 사업자)와 의료기관이 관여하는 노무제공구조를 가지고 있음.

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환자(보호자)를 사업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③현행법은 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특정한 직종을 법률을 통해 노무제공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현행법상 노무제공자와 간병인 비교>

구분	현행법상 노무제공자	간병인
보험가입자 (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 - ex) 퀵서비스기사-퀵서비스업체, 대리운전기사-대리운전업체, 건설 현장화물차주-화물주선업체 등 -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등의 의무 이행	○ (개정안)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해주는 사업을 하는 자(간병인 소개 사업자)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구조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보수액 결정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해 소득 정보 수집	○ 간병인 소개사업자가 별도의 월 보수액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거나, - 환자-간병인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소득 파악 어려움

기획재정부는 법체계상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직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로는 보험가입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로 간병인을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합하고, 간병인 소개 사업자는 간병인으로부터 회비를 납부받거나 무료로 알선하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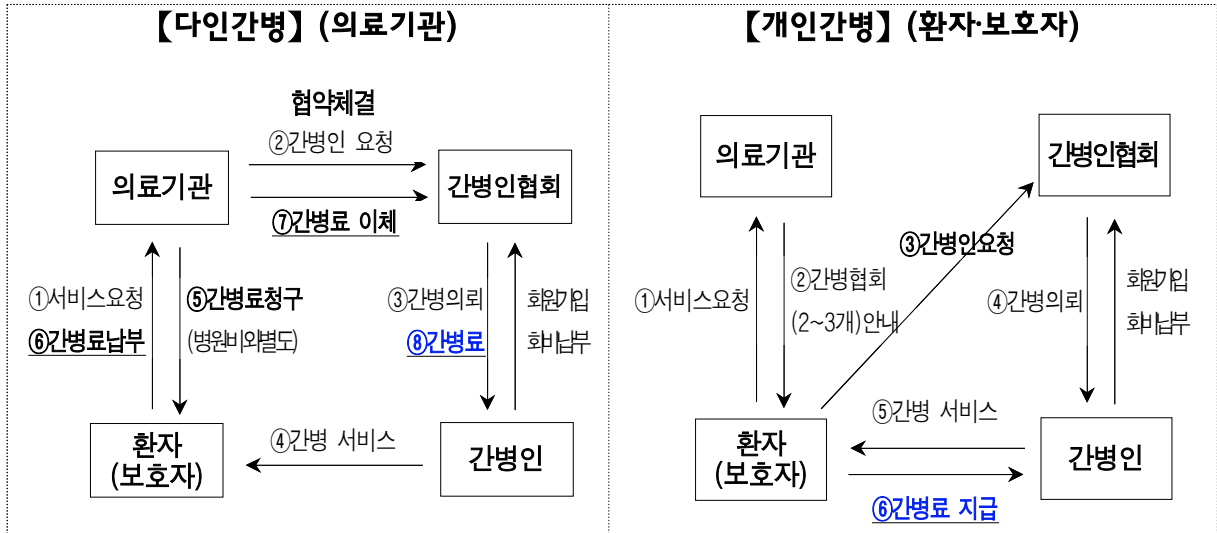
태로 사업을 운영하므로, 일반 사업주와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를 간병인 소개 사업자로 특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무제공자에 병원 간병인을 추가하는 것에 관하여 ①간병형태에 따라 간병료 청구·지급 절차가 상이하고, 간병인과 환자 사이에서 일을 소개하고 환자를 대신하여 간병료를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인협회 가입·탈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⁹⁾ 간병인별 소득과약 및 신고, 보험료 납부 업무 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 ②병원 간병인 사업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점,¹⁰⁾ ③현재 노무제공자 직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되고 있어 법률로서 이를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9) 고용노동부(2021. 8. 19.),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사간담회」 자료, 간병인은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5~6개 간병인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협회 가입 및 탈퇴를 빈번히 행하고 있음.

10) 동 법안에 부수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서는 ‘병원 간병인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소득과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p.2)’ 이라고 밝히고 있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병원 간병인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p.3)’하다고 보고 있음.

<간병서비스 종류 및 운영 형태>



참고로, 간병인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자체가 폭넓게 규정된 사례(오스트리아),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사례(독일, 프랑스, 미국 뉴욕주), 특별허가를 통해 제도에 가입하게 하는 사례(일본), 표준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사례(스위스) 등이 나타나고 있음.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 해외사례>

독일	프랑스	일본
사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적용 *가정 내 무급으로 간병활동을 하는 자는 제외	6개월 이상 고용된 가사사용인(간병인 포함)은 산재보험 적용	가내근로자(간병인 포함), 돌봄작업 종사자 등은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의 대상자로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 노재보험 가입

미국(뉴욕주)	스위스	오스트리아
정규직 직원(주당 40시간 이상 또는 상주 직원)을 둔 뉴욕의 가정 고용주(피고용인인 간병인을 포함)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사사용인(간병인 포함)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진 않지만, 각 주에서 고용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고용계약서를 강제	근로자와 유사한 경제활동을 하는 자는 일반사회보험법에 의하여 당연 적용 * (예시) 재택근무자, 자영업으로 하는 조산원 및 간병인 등

*자료: 고용노동부

문 의 처
02)6788-5540